

# 리스資本化의 公示方案에 關한 研究

## — 리스이용자의 측면에서 —

Disclosure of Lease Capitalization by Leasees

金 南 仁\*

(Kim, Nam In)

### 目 次

- I. 序 論
- II. 리스 會計의 一般的 考察
  - 1. 리스 會計情報의 有用性
  - 2. 우리나라 리스 產業의 現況
- III. 리스資本化에 關한 理論
  - 1. 리스資本化의 必要性
  - 2. 리스資本化에 關한 贊反論
  - 3. 리스資本化가 財務諸表에 미치는 影響
- IV. 리스資本化의 會計處理 및 公示方案
  - 1. 리스資本化의 會計處理實態
  - 2. 리스資本化의 公示實態
  - 3. 리스資本化의 會計處理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 4. 리스資本化의 公示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 V. 結 論  
〈參 考 文 獻〉

## I. 序 論

리스란 企業이 經營活動에 필요한 機械設備 등의 固定資產을 賃貸借方式에 의하여 調達하는 形態의 物的 金融이다. 이러한 리스가 현대적 의미로는 1952년에 설립된 미국의 U.S Leasing사를 시효로 급속한 成長을 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2년『韓國產業리스』가 발족되면서 中小企業 및 機械產業의 育成이라는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1973년에 法律 제2664호로『施設貸與育成法』를 制定하고 리스產業을 적극지원해 왔다.

그 결과로 리스契約은 持續的으로 增加하여 1973년의 契約고 11억원에서 1992년 12월 말 현재 契約件數 130,707件에 契約金額은 取得原價基準으로 325,912억원, 年平均 成長率70%에 이르고 있다<sup>1)</sup>. 이러한 리스의 이용추세는『租稅減免法』상의 投資稅額控除惠澤이 주어지는 상황하에서 지속되리라 보이며, 더우기 최근의 勞使紛糾로 인한 生產性低下를 克服하기위한 工場自動化 등의 推進과 결부되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종산업으로 팔목할만하게 성장한 리스거래는 본래 리스자산에 대한 法律的 所有權과 經濟的 使用權이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販賣나 購買活動과는 달리 會計處理上 여러가지 특수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거래량의 증가와 특성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제정된『리스會計處理基準』 자체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상의 통일성 여부가 어려운 실정이다<sup>2)</sup>.

특히 리스會計處理 및 財務報告公示와 관련된 문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利用者の 財務諸表上에 리스物件 使用權을 資產으로, 이에 상응하는 債務를 負債로 보고하는 문제 즉 리스의 資本化에 관한 것이다<sup>3)</sup>.

따라서 本稿에서는 리스去來의 資本化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리스利用者들이 행하고 있는 리스會計處理上의 問題點과 적절한 리스會計의 公示方案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本論文의 研究方法은 上記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內外 各種 關係書籍과 發表論文等에 대한 文獻研究를 통하여 分析的 檢討方法을 利用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리스產業의 現況 等을 分析하기 위하여 리스會社의 리스契約實態 및 리스去來의 事例 等을 分析하였다.

1) 韓國리스產業協會, 리스統計, 正文出版社, 1992年 9月, p.17

韓國리스 產業協會, 리스產業情報, 正文出版社, 1993年 3月, p.133.

2) 李重熙, 리스會計處理基準에 대한 分析的 檢討, 大韓稅務協會, 會計와 稅務, 1985,7,p.143.

3) 李重熙, 「리스會計」, 經文社, 1988, P.98.

## II. 리스의 一般的 考察

### 1. 리스會計情報의 有用性

#### 가. 리스會計의 本質

리스契約이란 特定資源의 使用權을 일정기간동안 賃貸人이 賃借人에게 移轉하고 그 대가로 賃借人은 賃貸人에게 정기적인 現金分割支給을 約定하여 취득하는 契約을 말한다.

미국의 FASB Statement No.13에서는 리스를 “一定期間동안 建物, 機械裝置 및 設備 等 債却可能資產과 土地들을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주고 받는 契約”<sup>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하에서 賃借人은 賃貸人 所有의 特定資產을 占有. 使用할 權利를 획득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리스료를 一定期間 賃貸人에게 支拂할 것에 동의한 債務를 부담한다. 여기에서 特定資產에 대한 使用權이라 함은 그 資產의 단순한 使用뿐만 아니라 그자산에 부수된 危險과 效益까지도 포함된 概念이다.

현대의 기업들은 필요한 固定資產을 購入하고자 할때 충분한 流動資金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餘裕資金이 있다고 해도 現代企業의 特殊性 즉 技術革新이나 特定製品의 壽命週期(life cycle)의 短縮 等에 의한 經濟的 危險을考慮한다면 필요한 資產을 賃貸하는것이 유리하다.

위의 두가지 문제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리스對象物件을 利用하게 되는 賃借人은 정기적인 리스료를 支給함으로써 필요한 資產을 직접구입하는 것과 같은 效果를 얻게되며 리스對象物件을 貸與하는 리스會社는 일정기간동안 所有權을 그대로 획득하면서 정기적 리스료 收入을 통하여 投資元金과 利子 및 附帶費用을 回收할수있는 效果를 가지게된다.

따라서 리스는 形式的으로 보면 賃貸借이지만 實質的으로는 중장기설비금융의 성격을 가진 物的 金融(physical finance)이기 때문에 리스產業을 金融業에 포함시킨다.

#### 나. 리스會計의 分類

##### 1) FASB의 리스分類

會計情報의 有用性 增大라는 會計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의 資本化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리스자본화와 관련시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리스분류에 관한 사항이다.

4) FASB, SFAS No.13, Accounting for Lease, 1976, Par.1.

리스는 자산의 소유에 따르는 便益과 危險이 實質的으로 移轉되느냐의 與否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sup>5)</sup>.

〈표 1〉 리스의 分類

리스利用者(leasee)의 分類	리스會社의 分類
資本리스(capital lease)	直接金融리스(direct financing lease) 販賣形리스(sales-type lease)
運用리스(operating lease)	레버리지드리스(leveraged lease) 運用리스(operating lease)

賃借人の立場에서 리스는 運用리스(operatiing lease)와 資本리스(capital lease)로 분류된다. 運用리스란 내용년수중 어느 한기간동안 그 使用權을 잠시 빌리는 것에 불과한 반면, 資本리스란 經濟的 實質이 賃借人에게 移轉되는 리스를 말한다.

賃貸人の立場에서 볼때도 리스는 資本리스와 運用리스로 分類된다. 資本리스는 다시 直接金融리스, 販賣形리스, 레버리지리스로 細分된다. 直接金融리스(direct-financing lease)는 리스자산의 公正價值와 그 資產의 取得原價(또는 帳簿價額)가 一致하여 리스 實行日에 賃貸人에게 損益을 가져다 주지 않는 資本리스를 말한다.

販賣形리스(sales-type lease)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그자산의 取得原價(또는 帳簿價額)가 불일치하여 리스실행일에 賃貸人에게 損益을 가져다 주는 資本리스를 말한다. 레버리지리스(leveraged lease)는 直接金融리스의 특수한 형태로서 賃借人과 賃貸人間의 契約에 銀行이나 金融機關 等의 第3者가 賃貸去來에 所要되는 資金을 장기융자해 주는 리스계약이다. 레버리지리스는 통상 稅制上の 利點때문에 賃貸人이 이용한다.

## 2) 우리나라 리스會計處理基準上의 分類

一般的으로 리스는 金融리스와 運用리스로 區分할수 있다. 金融리스(financial lease)란 리스계약기간동안 取消가 不可能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價額이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볼때 리스는 負債金融의 한 形態로 他負債와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 따라서 金融리스會計情報은 리스利用者の 財務構造에 많은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運用리스(operating lease)란 리스 契約期間동안 取消가 可能하며 리스자산의 價額을 償還하기 전에 리스계약이 終了되는 特性을 갖고있다.

우리나라의 「리스會計處理基準」은 財務諸表의 比較可能性을 높이고 명확한 實務指針을 제

5) Ibid.,pp.854-855

공하여 有用한 會計情報 를 提供할 目的으로 리스기간중 리스이용자에게 實質的인 契約解止 禁止條件이 부과된 리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金融리스로 分類하고 그밖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다.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 a. 리스기간 終了時 리스物件의 所有權을 리스이용자에게 移轉하기로 約定한 경우.
- b. 리스물건의 廉價購買選擇權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c.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經濟的 耐用年數를 超過하는 경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差異點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표 2〉와 같다.<sup>6)</sup>

〈표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 용 리 스	운 용 리 스
목 적	기계설비의 조달방법	물건의 일시적 사용
리 스 기 간	길다(내용년수의 60% 이상)	짧다.
중 도 해 제	불가능	가능
이 용 자	특정	불특정 다수
재 고	보유하지 않음	보유함
유지.보수책임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하 자 담 보 책 임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대 상 물 건	산업기계등	범용성이 있고 기술진부화가 빠른 물건
세 제 상	부채로 계상 (전액 손비인정)	부채로 계상못함

金融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세 資產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해 주는 것과 같은 리스로서 리스물건의 所有權에 附隨的인 모든 危險과 效益이 리스이용자에게 移轉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資本化해야 하는 리스를 말한다. 그리고 운용리스란 民法上 貸貸借의 經濟的 實質과 類似한 리스로서 리스물건의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危險과 效益이 리스회사에 存續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資本화하지 않아야 하는 리스를 말한다.

6) 經濟企劃院,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審訟集, 1988. 8.

## 2. 우리나라 리스產業의 現況

### 가. 우리나라 리스의 成長推移

1972년 우리나라에 리스산업이導入된 이후 刮目할만한 成長勢를 보인 리스產業은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3년에 11億원이던 리스契約實績이 1991年에는 7조2352億원으로增加하여 엄청난 成長率을 기록하고 있다. 리스산업이 이처럼 急速度로 發展할 수 있었던 이유는 國民經濟成長으로 인한 設備投資需要의 擴大와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制度金融下의 與信能力에 限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 年度別 리스產業의 契約實績

(單位 : 億원)

年 度	契 約 件 數	金 額	備 考
1973	15	11	
1974	26	41	
1975	49	39	
1976	104	89	
1977	189	222	
1978	376	460	107.2%
1979	491	986	114.3%
1980	597	1221	
1981	689	1424	
1982	750	1636	
1983	1162	3580	118.8%
1984	1745	6044	
1985	2629	9045	
1986	6106	14235	
1987	14497	19863	
1988	18100	26700	
1989	10699	24992	
1990	17515	49127	95.9%
1991	30075	72352	
1992	24893	93845	

#### 나. 業種別 리스 利用現況

리스산업이 발달한 先進國의 境遇 대체로 3次產業인 情報通信業 및 購入價格이 비싼 飛行機, 船舶 等에 주로 利用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표 4〉에서 보듯이 2次產業인 製造業部門에서 리스가 主從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產業構造상 2次產業部門이 中心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業種別 리스契約 構成比 (단위 : %)

업 종	73-79	82	85	86	87	88	89	90	91
農林水產業	0.8	1.3	1.9	3.1	2.7	1.6	0.5	1.0	0.4
광업	0.1	0.5	0.2	0.3	0.1	0.1	0.1	0.4	0.8
제조업	82.6	36.4	61.9	71.3	74.5	75.9	73.3	63.9	64.9
전기ガ스업	0.1	1.4	1.4	0.7	1.6	0.3	0.6	0.8	0.7
건설업	0.6	5.9	5.1	3.3	1.2	0.9	3.3	8.4	9.9
도소매숙박업	0.2	3.7	2.9	3.5	2.7	2.6	2.8	4.1	3.6
운수창고통신업	2.2	5.5	8.9	5.7	3.2	2.4	3.1	3.0	3.8
금융보험용역업	1.1	24.7	5.2	3.0	4.3	5.6	3.3	5.3	5.7
의료업	6.3	10.2	6.6	3.5	1.9	2.1	3.4	3.6	2.4
사회개인서비스업	6.0	10.4	5.9	5.6	7.8	8.5	9.6	9.5	7.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韓國리스產業協會

#### 다. 企業規模別 리스 利用現況

기업규모별 리스계약실적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의 리스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가 처음 도입된 1973년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리스이용비율이 69.2% : 17.6% 으로 대기업에 偏重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리스이용이 점차 增加하여 1990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의 리스이용비중이 대기업보다 크게 되었다. 이는 中小企業의 育成이라는 政府의 政策的 側面에서 “會社는 施設貸與 等을 함에 있어서 년간 리스계약의 100분의 40 이상을 中小企業에 支援해야 한다”<sup>7)</sup>고 規程하므로써 資金能力이 微弱한 中小企業의 리스이용을 奨勵하기 때문이다.

7) 施設貸與會社 事業運用準則 第4條

〈표 5〉 기업규모별 리스계약 분류

(단위 : 백만원)

	대 기 업		중 소 기 업		공 공 기 관		합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1973	753	69.2	191	17.6	144	13.2	1,088
1974	2,065	50.6	1,705	14.8	308	7.6	4,078
1975	2,052	53.3	1,656	43.0	144	3.7	3,852
1976	6,035	67.7	2,820	31.6	61	0.7	8,916
1977	11,767	53.1	7,839	35.4	2,561	11.5	22,167
1978	19,390	42.2	23,333	50.8	3,228	7.0	45,951
1979	51,825	52.6	30,954	31.4	15,807	16.0	98,586
1980	60,965	46.9	27,999	22.9	33,185	27.2	122,149
1981	63,815	44.4	33,185	23.3	40,062	32.3	137,062
1982	51,311	31.4	42,089	25.7	70,171	42.9	163,571
1983	201,284	56.2	69,451	19.4	87,239	24.4	357,947
1984	327,908	54.3	165,888	27.6	109,580	18.1	604,376
1985	494,046	54.6	241,768	26.7	168,718	18.7	904,532
1986	718,872	50.7	547,480	38.2	157,204	11.1	1,423,556
1987	1,097,068	55.2	695,789	35.0	193,457	9.8	1,986,314
1988	1,445,173	54.1	987,198	37.0	237,720	8.9	2,670,091
1989	1,232,120	49.3	1,704,295	43.0	192,787	7.7	2,499,202
1990	2,168,361	44.1	2,523,458	51.4	220,850	4.5	4,912,669
1991	3,324,115	45.9	3,463,925	50.4	267,174	3.7	7,235,214

資料 : 韓國리스產業協會

## 라. 期間別 金額別 產地別 리스利用實態

리스기간과 금액별 리스이용실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년 사이의 期間에서 10억원 以上의 金額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企業의 立場에서 볼때 5년이상의 장기자금으로 필요한 固定資產 設備를 리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技術의 進步에 따르는 設備의 陳腐化와 新技術의 開發이 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樣相을 考慮해 본다면 리스기간이 다소 줄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國產機械와 外國產機械의 契約推移를 보면 國產器械의 比重이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전까지 17% 미만이던 국산기계의 비율이 1990년 52.4%, 1991년 55.4%로 외국산기계보다 커지고 있다. 국산기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이유는 國產機資材의 質的

向上과 外貨貸出로도 國產機械의 購入을 許容한 政策的配慮 및 外國產機械의 境遇 換率과 金利가 리스料率과 연동되어 最終需要者에게 負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기간별, 금액별, 산지별 리스이용실태 (단위 : 백만원)

구 分	1986년		1987년		1988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기 간 별	1년~3년	11,646	0.8	16,508	0.8	20,359	0.8
	3년~5년	193,572	13.6	299,888	15.1	465,731	17.4
	5년~7년	1,019,091	71.6	1,505,599	75.8	2,034,576	76.2
	7년~10년	196,161	13.8	156,470	7.9	148,553	5.6
	10년 이상	3,086	0.2	7,849	0.4	872	0.0
금 액 별	1천만원미만	6,582	0.5	33,918	1.7	47,938	1.8
	1천~5천	36,190	2.5	62,503	3.2	107,383	4.0
	5천~1억	54,457	3.8	60,570	3.0	87,909	3.3
	1억~3억	156,295	11.0	178,916	9.0	189,190	7.1
	3억~10억	344,658	24.2	363,817	18.3	390,833	14.6
	10억이상	825,374	58.0	1,286,590	64.8	1,846,838	69.2
산 지	국 산	605,679	42.5	898,270	45.2	995,688	37.3
	외 국 산	817,877	57.5	1,088,044	54.8	1,674,403	62.7
계		1,423,556	100	1,986,314	100	2,670,091	100

구 分	1989년		1990년		1991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기 간 별	1년~3년	26,128	1.0	149,961	3.1	208,421	2.9
	3년~5년	420,413	16.8	1,226,266	25.0	2,155,808	29.8
	5년~7년	1,857,654	74.3	3,111,535	63.3	4,220,949	58.3
	7년~10년	189,772	7.6	402,260	8.2	643,664	8.9
	10년이상	5235	0.2	22,647	0.5	6,372	0.1
금 액 별	1천만원미만	14,008	0.6	116,730	2.4	90,858	1.3
	1천~5천	113,011	4.5	153,824	3.1	143,303	2.0
	5천~1억	77,260	3.1	130,523	2.7	169,470	2.3
	1억~3억	198,492	7.9	389,519	7.9	493,344	6.8
	3억~10억	406,655	7.7	876,182	17.8	1,075,526	14.9
	10억이상	1,689,776	67.6	3,245,891	66.1	5,262,713	72.7
산 지	국 산	1,210,866	48.5	2,574,746	52.4	4,005,383	55.4
	외 국	1,288,336	51.5	2,337,923	47.6	3,229,831	44.6
계		2,499,202	100	4,912,669	100	7,235,214	100

### III. 리스資本化에 관한 理論

#### 1. 리스 資本化의 必要性

리스의 本質을 어떻게 把握하느냐에 따라 리스去來의 會計處理 및 財務報告가 달라지게 된다. 즉 리스를 貸貸借契約에 가깝다고 看做하는 境遇에는 리스物件을 리스會社의 資產으로 計上하지만 資金調達에 의한 資產의 取得에 가깝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리스利用者의 資產으로 資本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運用리스의 境遇에는 會計上 리스料의 授受에 관하여 發生主義에 따라 收益과 費用으로 處理하면 되므로 會計處理上 특별한 問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金融리스의 境遇에는 資產의 割賦購買과 類似한 性格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그 會計處理에 관하여 相反된 意見이 對立하여왔다. 이와같은 論爭은 리스利用者가 리스資產을 자신의 貸借對照表에 公示 할수있느냐의 與否에 대한 論爭으로서 貸借對照表不計上論과 貸借對照表計上論으로 分類할 수 있다.

現行의 會計實務에서는 事實上 리스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財產權과 리스계약으로 지급되는 債務를 利用者들의 貸借對照表에 資產과 負債의 項目으로 表示하지않고 있다. 즉 財務諸表上에 資產과 負債의 增減없이 必要한 設備를 確保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부외금융효과(off-the balance sheet financing)를 이용하여 財務構造(流動比率과 負債比率 等)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리스產業의 育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契約에 대한 情報는 財務諸表utilizers의 意思決定에 目的適合한 情報이고 財務構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계약을 포함한 貸借企業의 財務狀態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리스계약의 資本화가 요청되고 있다.

#### 2. 資本化에 관한 贊反論

##### 가. 貸借對照表 不計上論

이것은 장기리스계약이라 하더라도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의 貸借對照表에 資產으로 計上하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1. 리스는 초기에 단순한 運用리스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所有者가 아니라는 점 2. 推定耐用年數보다 貸借年數가 단기라는 점 3. 中途解約이 可能하다는 점과 4. 所有權移轉이 制限되는 점을 들어 리스이용자의 貸借對照表上에 이를 計上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sup>8)</sup>

8) 朴勝義, “리스의 資本化 會計處理 安當性에 관한 研究,” 國稅 (1986年 2月號), pp48-49

기업에서 리스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대차대조표 불계상의 효과를 이용하여 貸借對照表에 나타나는 財務構造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거에서는 運用리스, 金融리스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리스는 대차대조표상에 공시할 필요가 없고, 모든 리스 情報는 脚註등의 補足的인 說明手段에 의하여 公示하게 된다. 즉 금융리스를 대차대조표상에 資產과 負債로서 기재하는 대신에 1. 보족적인 설명을 위한 註釋과 2. 리스의 明細事項을 명시한 明細表로서 公示하는 것이 실무적인 요청이기도 하였다<sup>9)</sup>.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銀行融資에 의한 設備調達과는 달리 리스契約은 購買契約이나 雇傭契約과 같은 未履行契約에 불과하다. 즉 리스계약이란 계약에 의해 리스회사에게는 리스물건의 使用權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고 리스이용자에게는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未履行契約이다. 그리고 現行 會計處理上 이러한 未履行契約은 資本化하지 않는 것이一般的이다. 따라서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가 資本화해서는 안된다.

둘째, 리스료 支給義務를 貸借對照表에 計上하므로써 負債가 증가되면 流動比率이 악화되는 등 財務構造를 불건전하게 하여 金融面에서 불리해진다. 이에 따라 리스의 선택유인이 축소 된다는 점과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비하여 租稅上의 各種惠澤을 受取할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며 리스초기에 損益計算書上 費用處理額이 증가된다. 세째, 리스物件에 대한 所有權이 리스會社에 있는 것이지, 리스利用者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의 資產으로 넣는다면 財務諸表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어 財務諸表 利用者들의 經濟的 意思決定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 나. 貸借對照表計上論

리스산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리스거래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한 비중도 증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다수의 事業用 固定資產去來의 實狀이 리스貸借對照表不計上으로 인하여 은익됨으로써 리스이용자의 財務諸表가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목적에 유용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은 비판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바 리스거래의 대차대조표 불계상으로 財務諸表를 통한 信用分析이 기업의 信用狀態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리스계약의 경우에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9) 鄭鎮守, “리스會計의 公示制度에 關한 研究”, 全北大 大學院, 1987 pp61~62

10) 高英彩, “리스會計에 關한 概念”, 月刊經濟 通卷108號(1985年 3月號), pp86~87

첫째,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取消不能의 장기리스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割賦購入한 것과 같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資產의 割賦購入費가 資本化 처리된다면 割賦購入去來와 유사한 리스계약도 자본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기업의 財務諸表와의 比較可能性(compar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도 리스자산을 자본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기리스계약에 의하여 설비자산을 조달한 기업이나 장기부채로 설비자산을 구입한 기업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기업사이의 比較可能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자산을 자본화하여야 한다.

장기리스자산을 모두 자산과 부채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화의 유일한 조건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수있는 장기적인 계약의 성립이라고 본다. 이러한 자산이 용권리에 바탕을 두어 자산화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장기리스자산은 모두 자본화시키게 된다.

### 3. 리스資本化가 財務諸表에 미치는 影響

#### 가. 貸借對照表에 미치는 影響

리스계약에서 固定資產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기리스는 대부분의 경우 固定資產을 割賦로 購入하는 것과 그 經濟的 實質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리스利用者는 當該固定資產 및 리스義務를 리스資產과 리스負債로써 財務諸表에 적절히 기록해야 할 것이다.

#### 리스계약을 資本化하여 會計處理하면

첫째, 리스契約을 맺은 첫年度부터 리스期間 終了시까지 리스資產과 負債가 추가계상되고 둘째,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充當金計定이 貸借對照表에 計上된다.

세째, 資產과 負債의 金額이 커지므로 회사의 財務構造와 관련된 比率 즉 流動比率, 負債比率, 總資產利益率, 純資產利益率 等이 달라지게된다.

즉 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을 경우(운용리스)에는 年間支給賃借料를 損益에 부담시킬 뿐이고 차년도에 지급하게될 賃借料支給義務는 貸借對照表에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내에 지급하여야할 流動負債가 公示되지 않으면 이로부터 산출된 流動比率은 단기적 支給能力의 정확한 지표가 될수 없다. 그러나 리스자본화로 상기의 리스의무가 유동부채로서 公示되면 유동비율은 보다 정확한 단기지급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리스를 資本化하지 않은 貸借對照表로부터 산출된 固定比率의 분자에는 實재로 經營活動에 사용된 리스固定資產이 제외되고 있어서 정확한 資本配分關係를 판정할 수 없다. 그러나 리스자본화를 하면 실제로 貸借會社의 生產活動에 사용된 리스고정자산이 貸借對照表에 반영되므로 정확한 資本配分關係를 판정할 수 있다.

리스資本화가 단기적으로 貸借對照表에 미치는 영향은 純運轉資本의 減少, 리스자산의 증가,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의 증대를 유발하여 총자산 및 총자본을 증가시키나 순자본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한 유동비율은 낮아지고 총부채의 증가로 부채비율은 높아지며 총자산의 증가로 總資產回轉率은 낮아진다.

#### 나. 損益計算書에 미치는 影響

리스계약의 자본화가 損益計算書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支給賃借科라는 비용항목 대신 支給利子와 減價償却費라는 費用項目이 계상된다.

둘째, 이자비용은 營業外費用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營業外費用은 증가하며 支給賃借科가 一般管理費에서 빠져나가므로 營業利益이 그만큼 더 크게 계상된다.

세째, 리스이용자가 製造會社일 경우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製造原價에 포함되므로 期末在工品原價, 賣出原價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

네째, 支給利子를 有效利子率法에 따라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加速償却法이나 定額法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의 초기에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이 지급임차료금액 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자본화하게되면 상대적으로 리스기간의 초기에는 순이익을 과소표시하게되고 후기에는 순이익을 과대표시하게 된다.

리스자본화가 단기적으로 損益計算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가 증대되어 法人稅差減前 純利益은 감소되고 또한 投資稅額控除 등의 혜택으로 法人稅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損益計算書上 支給利子 및 減價償却費가 감소되어 法人稅差減前 純利益은 증대되나 法人稅의 稅控除 惠澤이 상실되어 法人稅 부담이 가중된다. 물론 리스기간 전체를 통해서는 資本리스로 會計處理하나 運用리스로 會計處理하나 총금액적인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資本리스로 회계처리하면 초기에 당기순이익이 적게 계상되어 法人稅移延效果를 누릴수 있다.

#### 다. 財務狀態變動表에 미치는 影響

첫째, 리스계약을 맺은 년도의 財務狀態變動表에는 資金의 運用欄에 리스자산을 기록하고 자금의 원천란에 리스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둘째, 리스계약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매년의 支給賃借科만큼 營業活動으로부터 조달된 운전자본이 감소하게 되지만 리스계약을 자본화하고 이에 따라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면 이자비용만큼만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운전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리스會計情報가 財務諸表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리스資本化가 企業會計에 미치는 影響

방법 관점	운 용 리 스		금 용 리 스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세 금	당기순이익	세 금	유리 불리
리스 회사	이익계상이 초기에는 적고 기말에는 많다.	세금이 초기에는 많고 말기에 적다.	이익계상이 초기에 많고 말기에 적다.	초기에 세금으로인한 현금유출 크다.	운용리스가 유리
리스이용자	손실계정이 초기에 적고 말기에 많다.	세금유출이 초기에 많고 말기에 적다.	손실계상이 초기에 많고 말기에 적다.	초기에 세금이 적으나 말기에 많다.	금융리스가 유리

리스資本化는 단기적으로는 流動比率, 負債比率, 總資產營業利益率, 自己資本利益率, 利子補償率 등을 악화시켜 企業의 財務構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동비율을 제외한 流動性, 收益性, 레버리지比率들은 개선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여 財務構造를 개선시킬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 IV. 리스資本化의 會計處理 및 公示方案

### 1. 리스資本化의 會計處理

#### 가. 金融리스의 會計處理

##### 1). 리스資產 및 리스負債의 評價

金融리스의 경우 리스물건의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效益과 危險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資產과 負債를 計上하는 방법이다.

純額法은 리스料總額에서 未實現利子를 차감한 순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며, 總額法은 借邊에 리스료총액을 리스자산과목으로 계상하고 貸邊에는 리스실행일 이후에 속하는 이자 상당액을 未實現利子로 이들차액을 負債로 계상한다.

11) Monroe Ingberman, Joshua Ronen & George H. Sorter, "How Lease Capitalization under FASB Statement No.13 will Affect Financial Ratios," Financial Analysts Journal, (Jan.-Feb. 1979), pp.28-31.

리스회계처리기준에서는 순액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sup>12)</sup> 있으나 註釋으로 公示할 때에는 총액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註釋이 財務諸表의 일부이므로 동기준에서는 순액법과 총액법을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sup>14)</sup>. 여기서 다른자산과 동일한 방법이란 減價償却期間을 經濟的 耐用年數로 하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에 적용해온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減價償却充當金은 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減價償却期間을 리스기간으로 하지 않고 經濟的 耐用年數로 하는 것은 리스會計處理基準에서 金融리스로 분류되는 리스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즉 리스물건은 리스기간뿐만 아니라 리스물건의 經濟的 耐用年數에 걸쳐 리스이용자에게 효익과 위험을 제공하므로 리스자산은 經濟的 耐用年數에 따라 상각해야한다.<sup>15)</sup>

#### 〈리스實行日의 會計處理〉

(차) 금융리스자산 \* \* \* (대) 금융리스미지급금 \* \* \*

####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費〉

(차) 감가상각비 \* \* \* (대) 금융리스자산감가상각충당금 \* \* \*

#### 2). 리스료의 支給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기본리스료에는 負債元金償還額과 리스支給利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기본리스료를 利子率法에 의하여 負債元金償還額과 리스支給利子로 구분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에 각각 처리한다<sup>16)</sup>. 調整리스료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에 損益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元金 및 利子部分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調整리스료의 원인이 利子率 등의 일시적 변동일 경우에는 이자로만 취급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換率 등의 장기적 변동이나 리스물건의 계약상 이용시간을 초과사용 등의 원인에 따른 중요한 금액일 경우 元金과 利子部分을 구분하여 會計處理할 수 있다.

한편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에 직접 관련된 保險料, 修繕費, 稅金과 公課 등으로써 리스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은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비용은 所

12) 리스會計處理基準 第16條(리스資產 및 負債의 評價) 第1項

13) 同基準 第19條(註釋事項) 第2項 1

14) 同基準 第16條 第2項

15)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法人稅法上 耐用年數에 걸쳐 債却하고 있음

16) 동기준 제17조 제1항

17) 동기준 제17조 제2항

有權에 부수적인 것이고 金融리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所有權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시에 리스이용자의 費用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支給期日이 도래한 날의 分介〉

(차) 금융리스미지급금 \* \* \* (대) 현금 \* \* \*

금융리스미지급이자 \* \* \*

〈基本리스료보다 증가되는 調整리스료의 支給時〉

(차) 調整리스료 \* \* \* (대) 현금 \* \* \*

〈基本리스료보다 미달되는 調整리스료의 支給時〉

(차) 現金 \* \* \* (대) 調整리스료 \* \* \*

〈리스물건에 관련된 費用의 發生時〉

(차) 修繕費 \* \* \* (대) 現金(또는 未支給費用) \* \* \*

保險料 \* \* \*

稅金과公課 \* \* \*

### 3). 所有權의 取得에 隨伴하는 支出

리스기간중 廉價購買選擇權을 행사하거나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所有權을 취득함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資本的 支出로 처리한다<sup>18)</sup>. 資本的 支出로 계상하는 과목은 당해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어야 하며, 리스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리스물건에 대한 所有權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리스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이다.

〈金融리스未支給金의 殘額이 있는 경우〉

(차) 機械裝置 \* \* \* (대) 現金 \* \* \*

金融리스未支給金 \* \* \*

〈金融리스未支給金의 殘額이 없는 경우〉

(차) 機械裝置 \* \* \* (대) 現金 \* \* \*

## 나. 運用리스의 會計處理

리스자산의 取得原價는 리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取得原價의 일부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金融리스의 경우에는 이를 리스자산으로 계상하면 되나 運用리스의 경우에는 資產으로 계상할 수 없다. 長期先給費用으로 처리하여 리스기간동안에 걸쳐 債却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기본리스료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18) 동기준 제18조

리스이용자는 減價償却費를 運用리스料와 함께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얻게되는 收益과 대응시켜야 한다.

리스회계처리기준에서는 運用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해야한다<sup>19)</sup>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은 先給리스附帶費計定이며 貸借對照表上의 其他資產으로 분류한다<sup>20)</sup>. 그러나 이는 債却對象資產이므로 其他資產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運用리스機械, 運用리스設備 등 그 자산의 성격과 기능을 적절히 표시할수 있는 과목으로 계상하고, 이를 有形固定資產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取得原價의 일부를 부담한 때의 會計處理〉

(차) 先給리스附帶費 \* \* \* (대) 現金 \* \* \*

〈減價償却을 할 때〉

(차) 先給리스附帶費減價償却費 \* \* \* (대) 先給리스附帶費減價償却充當金 \* \* \*

## 2. 리스資本化의 公示

리스거래의 내용은 財務諸表에 적절히 반영하여 財務諸表利用者에게 효율적인 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리스자산의 본질은 다른 자산과 유사하나 거래방식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자산과 균등을 이루도록 적절히公示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회계처리기준에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부채에 대한 註釋事項만을 규정하고 있고 財務諸表의 표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리스회사와 마찬가지로 리스이용자도 리스거래에 관련된 資產 및 負債項目에 관하여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財務諸表에 표시함이 마땅하다.

### 가. 貸借對照表公示

運用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資產으로 計上하지 않고 費用으로 계상한다. 다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를 資產으로 계상하고 減價償却充當金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리스자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金融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割賦購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물건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債務는 金融리스未支給金이라는 負債로 處理한다.

지급기일이 도래하지않은 基本리스料에 대하여 미리 약속어음등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19) 리스회계처리기준 제 23조

20) 기업회계기준예규 50-870

약속어음 額面金額의 現在價值를 金融리스未支給金計定에 註記로 표시하면 된다. 또한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자산의 임대보증금 다음에 표기하면된다.

#### 나. 損益計算書의 公示

運用리스의 경우 리스료의 지급기일에 運用리스료와 調整리스료科目으로 처리하며 그성격에 따라서 製造原價나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에 포함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金融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費를 그 성격에 따라서 製造原價나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에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이때 金融리스資產의 減價償却費는 리스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資產에 대한 減價償却費와 특별히 구별할 필요없이 그 금액을 註釋으로 공시하면 된다. 外貨基準에 의한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 지급시에 발생하는 外換差損이나 外換差益, 期末에 金融리스未支給金을 평가시에 발생하는 外貨評價損失이나 外貨評價利益, 또는 換率調整借償却이나 換率調整貸還入 등은 營業外費用 또는 營業外收益으로 표기해야 한다.

#### 다. 註釋事項

註釋事項은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등의 特殊性으로 인해 基本財務諸表上 기재하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회계정보를 財務諸表와 別紙에 추가로 公示하는 것이다. 이는 본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것으로 財務諸表에 기재할 사항을 註釋으로 이용하는 등의 주석의 남용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註釋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1)</sup>.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그 회계처리방법을 註釋으로 기재하도록<sup>22)</sup> 하는 企業會計基準上의 규정사항 외에도 運用리스 및 金融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 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a. 運用리스의 註釋事項 : 運用리스에 대하여 最近 貸借對照表日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基本리스료 및 調整리스료 總額을 향후 5년간의 각 년도와 그 이상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註釋으로 표시하여야 한다<sup>23)</sup>. 調整리스료의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총리스료중에서 기본리스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b. 金融리스의 註釋事項 : 貸借對照表日 現在의 金融리스契約에 의하여 계상한 자산의 取

21) 企業회계기준 제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5항

22) 企業회계기준 제33조

23) 리스회계처리기준 제19조 제1항

得原價總額을 그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며 동리스자산의 減價償却費를 註釋으로 표시해야 한다<sup>24)</sup>.

한편 지금 해야 할 基本리스料 및 朝廷리스料總額은 최근 貸借對照表日 현재 金融리스契約에 따른 총금액을 향후 5년간의 각사업년도와 그 이후기간으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되, 조정리스료는 해당 대차대조표일현재 입수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서 기본리스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고, 기본리스료는 그 합계액에서 未經過利子를 差減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c. 其他의 註釋事項 :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配當에 관한 사항과 추가 산입 혹은 추가리스 등과 같은 金融活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財務制限 内容을 註釋으로 기재한다<sup>25)</sup>.

### 3. 리스會計處理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리스산업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은 자체는 리스거래 자체의 基本條件들에 국한되지만 크게는 급속한 經濟成長에서 비롯된 經濟的 次元의 문제와 상통한다고 볼수 있다. 리스對象物件의 國產化問題, 資金不足問題 및 政府의 政策的 支援問題 等의 리스산업제문제는 리스산업 그 자체의 문제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방안은 論外로 하고 본논문에서는 리스會計處理基準의 適用에 따른 問題點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對處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가. 減價償却時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리스會計處理基準에 의하면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是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金融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耐用年數동안 리스이용자가 當該資產의 使用權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리스자산의 耐用年數에 근거를 두고 減價償却하여야 한다. 따라서 리스기간이 經濟的 耐用年數보다 짧을 경우에는(예 리스기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나廉價購買選擇基準이 충족되는 경우) 리스기간동안의 減價償却費가 過少計上됨으로 인하여 리스기간 종료시 많은 금액의 리스자산잔액이 남게되며 再리스와 관련하여 이 리스자산잔액의 會計處理問題가 발생된다.

개념적으로 볼때 다음의 요건에 의해 금융리스로 분류된 경우에는 耐用年數가 아니라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자산을 減價償却 하여야 한다.

첫째,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經濟的 耐用年數와 거의 비슷한 경우

둘째, 리스料總額의 現價와 리스資產의 公正市場價值가 거의 비슷한 경우

24) 동기준 제19조 제2항 1,3호

25) 동기준 제 19조 제3항

#### 나. 金融리스資產과 負債金額의 計上問題

리스이용자가 金融리스資產과 金融리스債務를 계상할때 리스料總額으로 할것인지, 리스料總額의 現價로 할것인지의 문제이다. 리스회계기준에서는 리스料總額에서 利子相當額을 차감한 금액인 리스料總額의 現價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利子相當額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므로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基本리스料總額의 現價로 하도록하고 리스자산의 現價가 公正市場價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正價值로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가개념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나라의 회계적인 현실에 설득력을 갖게된다.

#### 다. 리스分類基準의 問題

現行의 基準과 通則은 리스이용자의 입장과 리스회사의 입장률 통일하여 리스의 분류조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리스는 어떤 종류의 리스인가에 따라 會計處理方法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양하고 복잡해진 리스거래에 적절하게 인용될수있고 구체적인 판단의 지침을 제시할수 있는 세분화된 분류조건이 리스이용자측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라. 基準과 通則은 미국의 FASB Statement.No.13을 기초로 하여 修正.公布되었으나 복잡하고 다양해진 리스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통일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會計環境과 企業實情에 맞는 意見書 및 實務上의 例規가 발표되어야 할것이다.

### 4. 公示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리스회계처리시 리스계약상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있는 리스資產의 價額, 리스期間 및 리스料의 内容을 모두 公示하고 있는 리스利用者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리스회계의 본질은 기타의 회계와 유사하나 去來方式이나 狀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정보와 균등을 이루도록 상기한 요건들을 적절히 公示해야 할 것이다. 즉 회계처리에 있어서 信賴性.比較性을 유지하면서 企業의 慣行도 중시하는 방향에서 리스정보의 公示와 타회계정보의 公示는 균형 및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리스회계의 公示에 있어서 리스회사는 대체로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존수하고 그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公示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이용자의 경우는 公示의 내용이나 그 형태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리스회계처리기준도 존수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리스分類上의 問題에 있으며, 회계담당자의 임의처리도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있다.

리스이용자의 公示에 있어서 運用리스의 경우는 會計處理도 간단하고 資本化를 시킬 필요도 없어 公示의 重要性도 그다지 크지않다. 그러나 金融리스의 경우는 이를 資本化하여 財務諸表上에 公示하여야 하므로 리스會計處理基準을 엄격히 遵守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리스資產價額은 리스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리스料總額에서 리스實行日 이후에 속하는 利子相當額을 차감한 금액을 公示하고, 資本化된 리스資產에 대해서는 여타 보유자산에 적용하는 減價償却方法으로 리스기간동안 減價償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負債는 리스料의 支給에 따라 償還되는 형식으로 會計處理하되 리스료는 利子率法에 의하여 부채원금의 상환부분과 지급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公示하도록 하고 있다.

리스회계정보 공시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리스자산은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통일된 公示를 해야하며, 리스부채도 고정부채로 통일하되 이를 1년기준으로 流動負債와 固定負債로 구분하여 公示하며 리스保證金은 賃借保證金으로 하여 이를 投資와 其他資產項目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리스회계에 관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리스에 관한 여러가지 용어와 그 개념을 충분하고도 정확히 파악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리스거래는 매우 다양하고 회계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의 표면상 내용과 이면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去來背景을 탄력적으로 인식하여 法律的形式과 經濟的 實質을 구분하여 관찰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이 정리되면 리스의 分類基準도 보다 명확해 질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실태에서 리스자산이 총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본재무제표에 公示하지 아니하고 註釋만으로 公示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金額上의 重要性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計定科目上의 重要性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현행 리스거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리스保證金에 대한 문제는 시차경과에 따른 利子相當額을 리스이용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네째, 리스회계는 制度會計로서의 稅務會計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制度會計를 무시한 企業會計 고유의 이론만 가지고는 리스회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리스會計는 個別的 去來 以前에 國家經濟政策의 방향에 따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리스산업은 稅法과 직결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投資稅額控除制度, 減價償却制度, 充當金設定 與否 等은 리스산업에 민감한 요인들로서 그 규정에 따라 리스회계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리스회계의 성격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도 리스회계기준은 있으나 리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리스회계 기준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稅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會計慣行으로 定立되어온 會計原則이나 基準과는 달리 리스회계는 정책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한 制度會計라는 점에서 目的指向性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리스회계가 그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制度會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의 經濟的 實質보다 法律的 形式에 그 방향이 설정된다면 會計의 目的適合性을 상실케

되어 會計情報률 歪曲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그 形式과 實質의 關係를 적절히 公示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 結論

導入時부터 눈부신 發展을 계속해온 우리나라의 리스產業은 앞으로도 設備資金需要의 증가와 급속한 技術革新에 따라 계속 成長하리라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리스會計處理 및 公示에 있어서도 리스產業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會計의 目的是 會計情報利用者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有用한 情報를 제공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을 효율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會計公示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리스거래도 회계의 경제적 사실을 財務諸表에 반영하기위해 그 처리와 공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리스會計處理基準이 마련되었으나 매우 包括的이고 具體的인 例示가 없어 適用上 統一性을 기하지 못하고 公示過程에서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리스자본화의 회계처리 및 공시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리스分類基準上의 문제점으로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리스자본화의 요건을 제시하였지만 그 요건 자체가 애매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簿外金融의 效果(off the balance sheet financing)를 누리기 위해서 分類基準을 無力化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리스분류기준을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리스資產의 減價償却費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세째, 리스회계는 制度會計로서의 稅務會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무회계적인 측면에서 리스會計處理 및 公示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리스資本化의 會計處理와 公示가 實務的으로 定着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준수하여 리스자본이 공시될때 그 기업과 관련있는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目的適合한 有用한 情報가 될것이다.

## 參考文獻

1. 經濟企劃院,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審結集, 1988.8
2. 李重熙, 리스會計, 經文社, 1988.

3. 韓國開發研究院,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1989.
4. 證券管理委員會, 리스會計處理基準, 韓國公認會計士會, 1985
5.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AICPA, (New York, 1973.)
6. ———, "Accounting for Lease," FASB Statement No.13, (Nov.1976).
7. Altman, Edward I., "Capitalization of Leases & the Predictability Of Financial Ratios : A Comment," The Accounting review (Apr.1976).
8. Bowman, Robert G., "The Debt Equivalence of Leases : An Emperical Investigation," The Accounting Review, (Apr. 1980).
9. Brealey, R.A. and Young C.M., "Debt, Taxes and Leasing," The Journal of Finance, (Dec. 1980).
10. Chamberlain, Douglas C., "Capitalization of Lease Obligations," Management Accounting, (Dec. 1975).
11. Chamberlain, Douglas C., "Capitalization of LeaseObligations," Management Accounting, (Dec. 1975).
12. EL-GAZZER, Samir, Steve Lilien and Victor Pastena, "Accoynting for Leases by Lease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8, (1986).
13. Emore, James Rovert, The Information content of Lease Disclosures—A Closer Examination, Ph. D. Dissertation, (1984).
14. Finnerty, Josep E., Rick N. Fitzsimmons & Thomas W.Oliver, "lease Capitalization & Systematic Risk," The Accounting Review, (Oct.1980).
15. Ingberman, Monroe., Joshua Ronen & George H. Sorter, "How Lease Capitalization under FASB Statement No.13 will Affect Financial Ratios," Financial Analysts Journal, (Jan.—Feb. 1979), pp.28—31.
16. Nelson, A, Tom., "Capitalizing Leases—The Effect on FinancialRatios," The Journal of Accounting, (July 1963).
17. Pond, Jonathan D., "capitalizing Leased Assets," Management Accounting, (Jan. 1977).
18. Ro, Byung T., "The Disclosure of Capitalized Lease Information and Stock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78).
19. Wilkins, Trevor and Ian Zimmer, "The Effect of Alternative Method of Accounting for Leases—An Emperical Study," ABACUS, (June 1983)
20. Wilkins, Trevor and Ian Zimmer, "The Effect of Leasing and Different Methods of Accounting for Leases on Credit Evaluations," The Accounting Review, (Oct.1983).